

# K-의료기기 국내·외 학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지침

2021. 5.



# 목 차

1. 목적 및 적용범위 .....	1
2. 용어의 정의 .....	1
3. 추진체계 및 절차 .....	2
4.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.....	3
5. 사업의 공고 .....	4
6. 참가기업 선정 .....	6
7. 지원금 지급 .....	7
8. 사업결과의 보고 .....	8
9. 제재 및 환수 .....	8
10. 기타 사항 .....	9

# K-의료기기 국내·외 학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지침

## 1. 목적 및 적용범위

본 지침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「충청북도 K-의료기기 국내·외 학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」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용어의 정의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가. “전담기관”은 충청북도가 사업에 대한 기획, 평가,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나. “신청기업”은 본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.
- 다. “참가기업”은 국내외 학회 및 박람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하여 선정된 모든 기업을 말한다.
- 라. “전시용역사”는 전담기관으로부터 박람회 지원사업의 일부를 용역받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.
- 마. “평가위원회”란 참가기업 선정, 전시용역사 선정, 참가기업 중복지원에 따른 제재, 전시용역사의 입찰 참가제한 등 평가 및 기타 중요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.
- 바. “박람회 관련 공사”는 디자인 및 부스공사, 바닥공사, 전기시설공사, 구조·광고물공사, 그 밖에 전시 디자인 설치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.

사. “박람회 관련 용역”은 장비 임대, 설치 및 시설제공, 홍보물 제작, 정보통신, 인력서비스, 그 밖에 재단이 전시용역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.

### 3. 추진체계 및 절차

지원사업의 역할과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다. 단, 사업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이는 기본계획 수립 시 명시해야 한다.

1) 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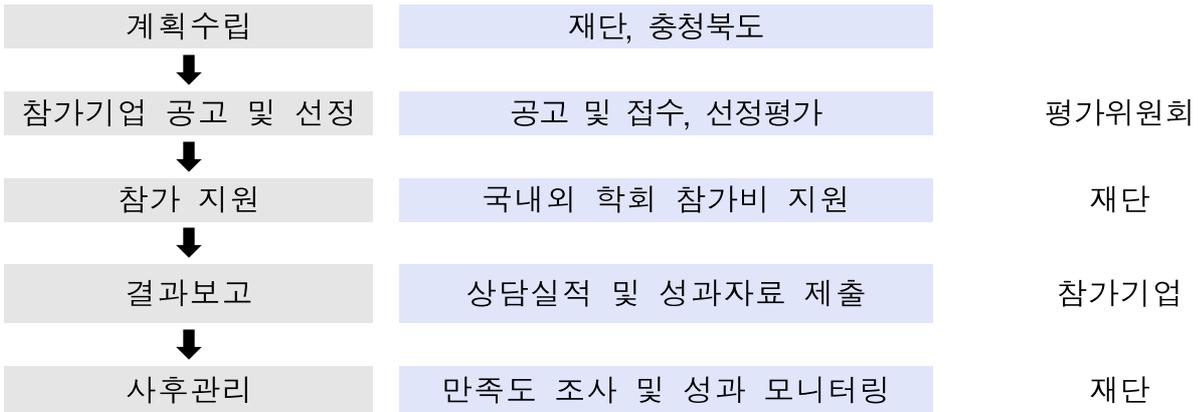
- ① 사업 세부계획 수립, 점검,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등 사업수행 전담
- ② 참가기업 모집, 선정평가 등
- ③ 박람회 참가업무 수행
- ④ 학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
- ⑤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요청하는 사항

2) 참가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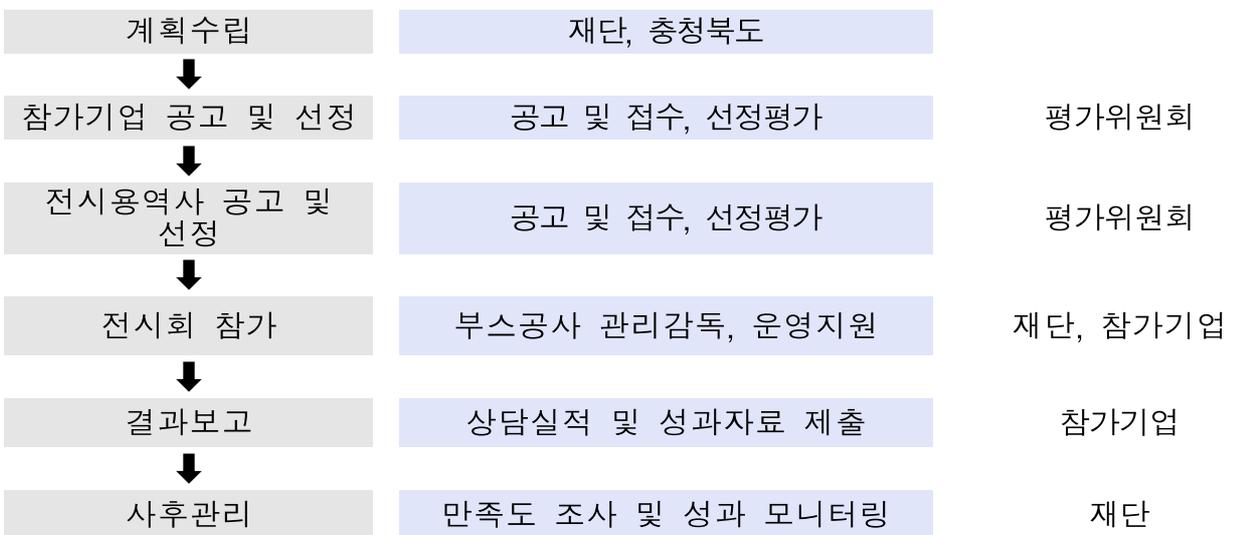
- ① 참가신청서 등 신청서류 제출
- ② 참가기업부담금의 납부(해당 시)
- ③ 학회 및 박람회 참가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
- ④ 바이어 상담 실적 및 만족도 조사 대응
- ⑤ 전시회 종료 후 성과모니터링에 대한 대응

3)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.

가) 국내외 학회 지원



나) 국제 박람회 지원



<b>4.</b>	<b>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</b>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가. 재단의 장은 사업의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- 1) 참가기업 선정
- 2) 전시용역사 선정

- 3) 참여제한 등 중요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
  - 4) 재단의 장이 사업의 기획·평가·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나.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내·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제척하여야 한다.
- 1) 평가대상자와 경쟁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 - 2) 평가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- 3)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
- 다. 평가대상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라. 평가위원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피 대상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회피 여부를 결정한다.
- 마. 평가위원장은 참석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바. 평가위원회는 발표, 서면, 토론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## 5. 사업의 공고

### 가. 참가기업 모집공고

- 1) 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 모집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,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  - 가) 국내외 학회 및 박람회 사업 개요
  - 나) 지원사항, 참가기업 부담금, 추진일정
  - 다) 신청자격, 신청기간, 신청방법
  - 라)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나. 신청서류 양식 교부

- 1) 사업의 신청서류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부한다.
- 2) 재단의 장은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를 시행계획 공고일로부터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#### 다. 허위 작성 신청서류에 대한 조치

- 1) 재단의 장은 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류에 대한 정밀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2) 재단의 장은 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당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
#### 라. 신청절차 안내

##### 1) 신청서류의 제출

신청기업은 신청서류를 공고에 명시된 접수마감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하다.

##### 2) 신청서류의 보완

- 가) 재단의 장은 신청서류 중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- 나) 신청기업의 장은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, 신청서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마. 신청서류 검토

재단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신청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.

##### 가) 신청자격

- (1) 신청기업 및 그 대표 및 총괄책임자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(2) 신청자격의 충족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나) 제재 대상 여부 검토

(1) 신청기업 및 그 대표 및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(2) 제재대상 여부 검토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이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·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문의하는 방법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.

## 6. 참가기업 선정

가. 평가 및 선정

1) 재단의 장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서류심사,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참가기업을 선정한다. 다만, 전시회 특성 및 신청수요에 따라 서류심사만으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.(평가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)

2) 서류심사는 신청서류, 인증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.

가)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

나) 사업의 중복성 검토.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,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 여부를 판단한다.

다) 사업신청의 제한 등

3) 재단의 장은 서류심사를 위하여 신청자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신청서류 외 추가적으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이 지정한 기한까지 추가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4) 평가위원회는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확정, 모집기업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한다.

5)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전시회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으로

지원해서는 안 되며, 재단은 참가기업이 중복수혜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- 6) 재단은 참가기업 선정결과를 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기업에 서면으로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.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, 1회에 한하여 재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#### 나. 참가 취소

- 1) 선정된 기업이 박람회 사전협의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참가기업 부담금을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,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2) 불가항력(천재지변, 테러, 화재, 전염병,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, 기타 재단이 인정하는 사항)으로 박람회 공동관 참가사업이 중단될 경우, 사업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,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상호협의(필요시, 공인회계사에 의한 산정)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한다. 단, 학회 참가지원의 경우, 신청 학회가 취소될 시 기업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- 3) 제2항과 같은 사유로 전시회 개막 및 참가에 차질이 있어 전시장 임차료 등 일부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, 동 금액은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참가기업에 환불한다.

## 7. 지원금 지급

#### 가. 국내외 학회 참가

- 1) 재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시 지원하기로한 기업 지원금을 지원한다.
- 2) 기업 지원금은 신청한 학회 참가를 완료한 후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참가기업은 학회 종료일 기준 3주 이내에 결과보고서, 참가비용 지급신청서류, 그 밖의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- 4) 재단은 참가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. 또한 필요 시 참가기업에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재단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.
- 4) 참가기업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방식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, 그 밖의 학회 참가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업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# 나. 국제 박람회 참가

- 1) 재단은 공동관 구성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임차료, 전시디자인, 설치비, 운영비 등 총 소요비용의 80% 이내를 지원한다. 단,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사업 공고 시 지원범위를 조정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.

### 8. 사업결과의 보고

- 1) 참가기업은 재단의 장이 요청하는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사업 성과보고와 관련하여 재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2) 재단은 박람회 참가 성과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
### 9. 제재 및 환수

#### 가. 사업의 제재

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제재조치는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 운영요령의 제재 및 환수기준을 준용한다.

- 1)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(타기관 및 단체의 보조사업을 통해 동일 참가 건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)
- 2)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해 허위 보고한 경우
- 3)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,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
- 4) 기타 규정을 불이행한 경우

나. 사법기관 등에서 허위·거짓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지원금 관리조례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.

## 10. 기타 사항

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충청북도 고시 제2015-173호 「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 운영요령」 및 재단의 결정과 해석에 따른다.